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2차]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 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신청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하고 있으니 인천시 소상공인께서는 일부 확인되지 않은 업체의 홍보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부실시공,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과제 시행, 유사과제 중복지원

◆ 시공업체는 **인천시 소재업체**에 한하며, 외주업체(시공, 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참여 시, 시공업체는 **최대 1개**로 참여를 한정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인천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7일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장

1.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지원내용

단위사업명	세부 지원 내용	지원한도액	지원업체 수
점포환경개선	<input type="checkbox"/> 옥외간판 교체	최대 200만원 (공급가액 80%)	15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제품 진열대, 수납대 등		
	<input type="checkbox"/> 입식 좌석 개선		
	<input type="checkbox"/> 내.외부인테리어 (도배, 조명, 샷시, 닥트, 바닥 공사 등)		
홍보 및 광고	<input type="checkbox"/>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리플렛, 카달로그, 판촉물 등)	최대 150만원 (공급가액 80%)	10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제품 포장(포장용기, 쇼핑백 등)		
	<input type="checkbox"/> 온라인광고(홈페이지 제작 제외)		
	<input type="checkbox"/> 대중교통, 신문, 게시대 광고 등		
위생 및 안전관리	<input type="checkbox"/> 방역, 소독, 청소용역 비용 등 (매장 소독, 살균소독기, 해충퇴치기 등)	최대 100만원 (공급가액 80%)	5개 업체
	<input type="checkbox"/> 전기, 가스, 화재 점검 및 교체 비용 등		
	<input type="checkbox"/> CCTV 구매 및 설치비용 등		
	<input type="checkbox"/> 코로나19 예방 관련 지원 (손소독기 설치, 손소독제 및 살균소독제 구입, 마스크 및 체온계 구입 등)		

※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단, 단위사업별 최대 지원한도액 내에서만 지원 가능함.)

신청시
유의
사항

- **3개의 단위사업** 중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복수선택 가능
(예) 간판+바닥 공사, 온라인광고+홍보물 제작, CCTV설치+손소독기 설치
-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세 및 자부담(20%) 등 초과금액은 신청업체 부담**
(예)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275만원(공급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50만원의 80%(200만원)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단위사업별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함. (지원한도액 필수 확인)
- **자산성 물품, 렌탈 비용, 중고시설,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원불가**
(살균 소독기, 해충퇴치기, CCTV, 손소독기, 손소독제 및 살균소독제, 마스크 및 체온계 등은 지원 가능함)
- 온라인 광고 및 방역.청소 용역 비용은 **사업 시행 기간(10-11월) 내에 수행한 것만 지원 가능**
- **홍보 및 광고 단위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 지원 불가**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
※ 지원신청(지원업체→센터) → 평가 및 선정 → 선정통보(센터→지원업체)
선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경영개선사업 진행해야 함.
- **경영개선 작업 후, 별도 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서 제출해야 함**
- **2019년, 2020년 경영개선사업 등 유사 중복 신청 시 선정 취소, 지원금 지급 불가**
- 사업 완료보고서, 지원금 신청서, 지출 증빙자료 기간 엄수하여 제출(**11/30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 처리
※ 2019년, 2020년 경영개선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불가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자격요건 두 가지 충족해야 지원신청 가능)

1) 공고일 현재 **사업장 주소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자**

2)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행위를 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2019. 9 7 이전까지 신청 가능 (사업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 매출액 소기업 규모 [별표1]에 해당
※ 용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 등록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성립일 기준

▣ 접수방법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와 함께 센터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접수처	
우편번호	주소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2층 인천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경영개선사업 담당자 앞

- 소상공인 사업자 개별신청이 원칙이며,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 신청서류 미제출, 부실제출의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 홈페이지 다운로드하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
→ 홈페이지(<https://www.insupport.or.kr/>) 접속,
공지사항『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2차)』 다운로드 후 신청서 작성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 제출서류(신청서)

구분	제출자료 목록
신청 필수 서류	1. 지원신청서[제1호서식]
	2. 사업 추진계획서[제2호서식]
	3.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제3호서식]
	4. 견적서 1부 [제4호서식]
	5. 비교견적서 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업체 연락처, 도장 날인 필수 - 부가세 포함하여 견적서 제출(지원금 신청 시, 세금계산서 제출 필수) - 단위사업 내 세부항목을 지원할 경우, 각 항목별 견적서 제출 - 시공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에 한함
서류 제출 (필수)	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7. 국세납세증명서 1부,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인터넷(정부24)발급, 행정복지센터 발급
	8. 매출액 증빙서류(2019년) 1부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인터넷(정부24)발급, 행정복지센터 발급
	9. 상시 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발급처: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 - (종업원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https://minwon.nhis.or.kr/]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성명, 싸인 또는 도장 필수 -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 (공동대표)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필수 제출	

▣ **접수기간 : 2020. 9. 7. (월) ~ 2020. 9. 18. (금) 18:00까지**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지원규모**

- **약 30개 업체** (※ 예산 한도 내,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본 지원사업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지원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지원함
-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임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서류 검토
- 2차 : 심사위원회 개최 선정 평가(내.외부 심사위원 선정)

▣ **선정기준**

-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서면 평가
- 평가항목 : 매출기준, 업력 현황, 일자리 현황, 지원 효과성 및 필요성 등
- 우대사항
 - 인천e음 혜택 플러스 가맹점(공고일 기준 가맹점에 가입 업체만 가점 부여)
 - 2020년 센터 종합컨설팅 수진업체(공고일 기준 종합컨설팅 참여 중인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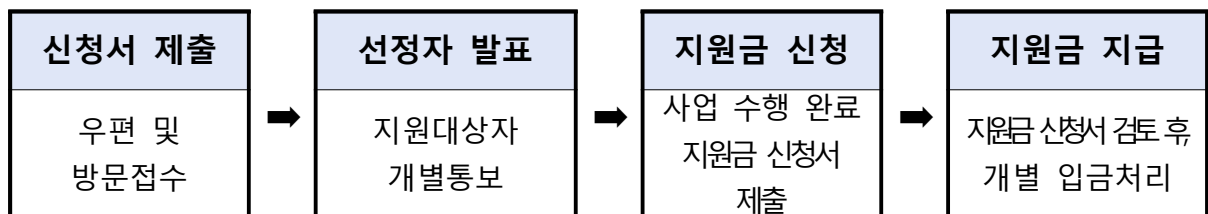
▣ **지원대상자 선정 발표**

- **2020년 9월 말 예정**
- **지원대상 선정자는 문자로 개별통보** 되므로 신청서상에 핸드폰 번호 정확히 기재

3. 추진절차

▣ **추진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선정 평가 후 선정통지를 받은 대표자가 사업추진 후 지원금 신청 및 완료 보고



▣ 단계별 절차

신청 및 평가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센터로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 간접서 등 제출서류 부실 시 감점 될 수 있음
	↓	
	선정 평가 및 지원결정 (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서류 검토(신청서류 적격 평가) · 2차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원 결정
	↓	
선정발표	지원대상자 통보 (센터→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소상공인에게 선정결과 통보(문자) · 선정된 소상공인은 선정결과 통보 받은 후에 과제수행
	↓	
교육	경영개선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선정대상자 경영개선교육 실시(필수) (※10월 진행 예정이나, 코로나19로 연기될 수 있음)
	↓	
컨설팅	경영환경개선 컨설팅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경영진단 컨설팅(필수) · 1:1로 컨설턴트 매칭되어 총 2회 컨설팅 진행
	↓	
사업진행	경영환경개선 사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신청내용 및 선정내용 변경 시 변경신청서 제출) · 시공업체에 제작 소요 비용 입금(부가세 포함) (※ 계좌이체 필수, 카드결제 및 현금지급 불가)
	↓	
지원금 신청 및 완료보고	지원금신청서 제출 (소상공인→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신청서 지출증빙 자료 등 제출
	↓	
	지원금 지급 (센터→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점포환경개선 등 사업 수행 상태 확인 및 점검 · 완료보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검토 후 지원금 지급

※ 경영개선교육은 10월 진행 예정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교육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교육 수수료 후에 지원금 지급 가능함.)

※ 결정된 사업에 한해서 지원되며, 사업수행 중도 변경 및 포기 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사업변경 [서식 제5호], 사업 포기 [서식 제6호])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개월** 소요

4. 유의사항 [선정취소, 지원내용 변경 및 포기, 지원금 신청 등]

▣ 지원선정 취소

-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별표1] 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시공한 경우
- 타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전변경승인 없이 시공업체 변경 및 과제 주요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정기한(11/30일)**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 이내 경영환경개선 시공을 마치고 완료보고서 제출 해야 함)
-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련 법률 위반, 과제부실 등 인천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원선정 신청내용 변경 및 포기

- 선정된 지원사항의 주요 내용 변경, 시공업체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승인요청서【제5호 서식】를 제출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 변경은 불가함.)**
- 사업변경승인요청서【제5호 서식】 제출 후, 변경 승인 후에 시공(제작) 작업을 시행해야 함
- **신청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신청내용 변경 시 제작비용이 감소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80%로 감액 변경하여 지급.**
- 지원포기의 경우 지원사업포기신청서【제6호 서식】 제출하여야 함 (차순위 예비 순번자에게 기회 제공)

▣ 제작(시공)비용 입금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필수. (현금 지급, 카드 결제 불가)**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 금액, 이체 일자가 명확하기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임.**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센터는 필요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 지출의 방식**
 - 1)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 보고서 및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원칙임**
 - 2) **소상공인 사업자가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공급가액20%, 초과분)에 대해서만 선 지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시공업체에 지급(사업담당자와 상의 후, 진행 여부 결정)**

▣ **외주업체(시공, 제작업체) 선택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 선정업체 본인이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선정취소)
- 소상공인 사업자는 시공내용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외주업체를 선정해야 함.
- 시공업체는 **인천시 소재업체**에 한하며, 소상공인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부모, 조부모, 형제 등)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및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 (지원금 신청 시 옥외광고업 등록증 제출해야 함.)
- 외주업체(시공,제작업체 또는 대행업체) 참여 시 **시공업체는 최대 1개로 참여를 한정함.**

▣ **완료 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 통보 후 안내된 제출기한(11/30일) 이내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지출 증빙 등 일체 서류 제출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제출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소요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결정 취소**

▣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업체가 경영개선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제출자료 목록
필수	1.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서식 제7호]
	2.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서식 제8호]
	3. 계좌이체 입금 확인증 ☞ 입금자 성명·계좌번호, 수취인 성명·계좌번호, 입금금액, 이체 일자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현금 및 신용카드 결제 불가)
	4. 전자세금계산서 1부 (시공업체 일반과세자) 전자세금계산서, 수기세금계산서(연매출 3억원 미만) (시공업체 간이과세자) 현금영수증 ☞ 수기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제출의 경우, 시공업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제출
	5 제작(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시공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시공 업체별로 사업자등록증 제출]
	6. 통장사본 각 1부 - 소상공인이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 지출: 대표자 또는 사업장 통장사본 - 소상공인이 자부담 부분(부가세 및 자부담 20%)만 부담: 시공(제작)업체 통장사본

추가 선택	간판시공	1. 옥외광고업등록증_필수(시공업체) 2. (신고대상)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 (미신고대상)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 비대상 확인서[서식 제 9호]
	홍보 및 광고	- 홍보물 제작: 리플렛 및 키달로그(실사 첨부), 홍보물품(사진 첨부) - 제품포장: 제품 포장 용기 및 박스 사진 첨부 - 온라인 및 아파트 전담지함 광고: 광고계약서, 결과보고서 등 첨부
	CCTV 설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서식 제10호]
	방역 및 청소용역	위생 및 방역 결과보고서, 작업 중인 사진 첨부
제작(시공)내용 변경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서식 제5호], 견적서,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지원사업 포기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서식 제6호]

▣ 기타사항

- 대표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는 지원 불가
- 국고보조금, 장기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또는 타 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 지원 불가(ex. 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등)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019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는 지원 불가
-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및 가맹점 지원 불가

5. 제재조치 및 벌칙 등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④ 인천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위법 및 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 서류 위변조, 선정통지일 이전 사업 시행, 당 기관 및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과제 중복 지원, 부가가치세법 위반 등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공고문 및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 별도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9. 농업, 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9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 2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표준산업분류	업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표준산업분류	업종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 단,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